

연세문화제12.

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안건지 (98년 2월 24일)

집행부 논의에 앞서 비욘드의 3.8문제 제안을 들어봅시다.

1. 보고 사항

- 1) 중앙운영위원회 보고
- 2) 각 국별 보고

2. 논의 사항

- 1) 학기 사업 전체 그림 그리기, 그 중에서도 3월 확실히 계획 세우기
- 2) 자치단체 총회
- (3) 법대와 함께 ~~수요시위~~ 가는 문제
- (4) OT평가일정 잡기
- 5) 3월 첫주 선전

3. 다음주에는...

- 1) 애포레....
- 2) 3.8판

(연대회의
pm 12:00)

<연세 문화> with. 가죽

3월 1일 pm 7:00 총여학생

(페미니즘 시각에서 볼 가죽 1.8장
가죽을 반사하지않는가?)

① 수강생
② 연대회의 여성

제 3 혁명

제35대 총학생회

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 : 361-3641~4)

특별기구예산배정 및 자치기구예산배분에 대한 총학생회 계획초안

▶ 현 9개 기구 배정액에 대해

- 현재 예산을 배분받고 있는 9개 특별기구배정액을 특별기구배정액 및 자치기구배정액으로 나눈다.
- 예산 배분에 있어 특별기구배정액 대상기구의 구성은 중운위에서 심의 결정하고 자치기구배정액 대상기구의 구성은 총학생회가 계획후 중운위가 심의한다.

▶ 특별기구배정액 → 중운위 (17%)?

- 특별기구는 특별기구로 남아있는 한 안정적으로 예산을 배분받는다.
- 특별기구에 배정되는 예산의 총액 또는 총비율은 중운위에서 결정하고 각 단위의 비율은 총학생회 총무와 각 특별기구들의 총무단 회의를 통해 결정, 이를 중운위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특별기구배분액의 인상 및 인하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단대학생회비와 총학생회중앙배정예산의 조정을 통해 보상한다.
- 98년도 특별기구는 총여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로 한다.
- 98년도 특별기구 배정비율은 총액대비 11 ± 0.5%로 한다.

▶ 자치기구배정액

- 자치기구배정액의 대상이 되는 자치기구는 학생회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구성원과 활동이 전 연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.
- 자치기구배정액에 대한 예산은 중운위에서 총액 또는 총비율을 결정한다. 또한 예산을 지급받을 자치단체의 下限數를 중운위에서 결정한다. 이후 예산을 배분받을 자치단체의 선정 및 그 집행계획은 총학생회가 계획하고 이를 중운위에서 심의한다.
- 자치기구배분액의 구성은 중운위에서 결정된 下限數 이상의 자치기구에 대한 일정비율의 배분액과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치기구들에 대한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자치액으로 이루어진다.
- 예산자치액의 사용에 관한 심의 및 집행은 중운위의 심의에 의해 구성된 소위원회가 맡는다.
 - 소위원회의 위상 및 구성계획은 이후 제출예정
- 위의 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자치기구배정액의 총액을 전년도 대비 3% 인상하고 특별공동예산의 조정으로 보상한다.
- 자치기구배정액에 대한 인상 및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공동예산배분액을 조정하여 결정한다.
- 98년도 1학기는 기존의 7개 단체에대한 예산배정을 인정하고 2학기 부터는 중운위에서 결정된 세칙에 따라 모든 단체에 동등하게 개방한다.
- 예산자치액 배정은 98년도 1학기부터 실행한다.

↑ 새해를 통해 인정받은 기구. (자치기구)

